

연구자 공제회법안에 대한 토론

김명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원생 과정이 학생신분 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과정이며, 안정적 고용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자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불안정 연구자의 문제를 단순히 사용자와 노동자, 자본과 노동이라는 양자구조 속에서 개별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연구자 노조에 대한 당위를 만들었다면, 연구자에 대한 실제적 지원과 혜택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제회 설립도 필요하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복지는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위해서는 과도한 교육이나 연구 부담을 각 개인이 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제도 등의 복지혜택은 고려하기 힘든 여건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구자 공제회법안은 불안정 연구자에게 실제적 환경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여러 노조나 단체에 산발적으로 가입해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노조 및 단체 가입을 꺼리던 연구자들에게도 공정한 지식생산과 복지를 위한 연구자 공제회는 가입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해 불안정 연구자의 힘을 하나로 규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원생 노조 등 다양한 불안정 연구자 단체와 연대하는 방안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비영리민간영역과 협업하여 상조, 의료서비스, 대출 등의 필수적인 공제서비스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 역시 차후 고려될 필요가 있다(예.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행복한 천원상조, 녹색병원 연구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야간진료 및 휴일진료연계, 사회연대기금과 소액무이자 혹은 저리 대출서비스 등)

발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공제회법’의 적용 대상인 연구자가 학교 내 ‘대학원생’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내외불안정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자’에 대한 정의가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내의 연구자로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면, 연구자 공제회법안의 “사업주”에 대한 정의가 현재의 “연구자를 양성교육하는자”로 제한한 것에서 “고용”이나 “연구발주” 등을 포함하는 등 그 범주를 확장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특히 고등교육현장 밖에서 연구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ex. 대학 등에서 강사나 연구자로서의 소속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FGI 조사에서 대상을 박사과정생 뿐 아니라 대학 강사, 학교 밖 연구자 등으로 넓으면 경제적 사유 뿐 아니라 삶의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결혼, 장례 등 일상의 사건들에서 공제회에 대한 더욱 다양한 필요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년트랙 교수나 연구자 등 전임이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연구자와도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연구자공제회가 ‘공정한 생산과 복지’를 위한 대안을 만들고 연구 노동자로서 당당히 길을 걷는 또 하나의 환경이 되길 바라고 함께 하겠다.